임종우 접수상담팀장

대법원 판결은 무죄, 여론재판은 유죄

소위 '전통미디어'라고 하는 신문, 방송 등과 달리 '인터넷'은 그 어느 미디어보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미디어로서, '인터넷 뉴스콘텐츠'의 일부가 된 기사 댓글은 기사와 함께 상호작용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부정확한' 기사는 '잘못된', '부정확한' 댓글로 이어지게 마련이며, 이러한 기사와 댓글로 이루어진 '잘못된', '부정확한' 인터넷 뉴스콘텐츠는 당사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언론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거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기사의 파급력에 더해 댓글이 피해를 증폭시키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콘텐츠(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동시에,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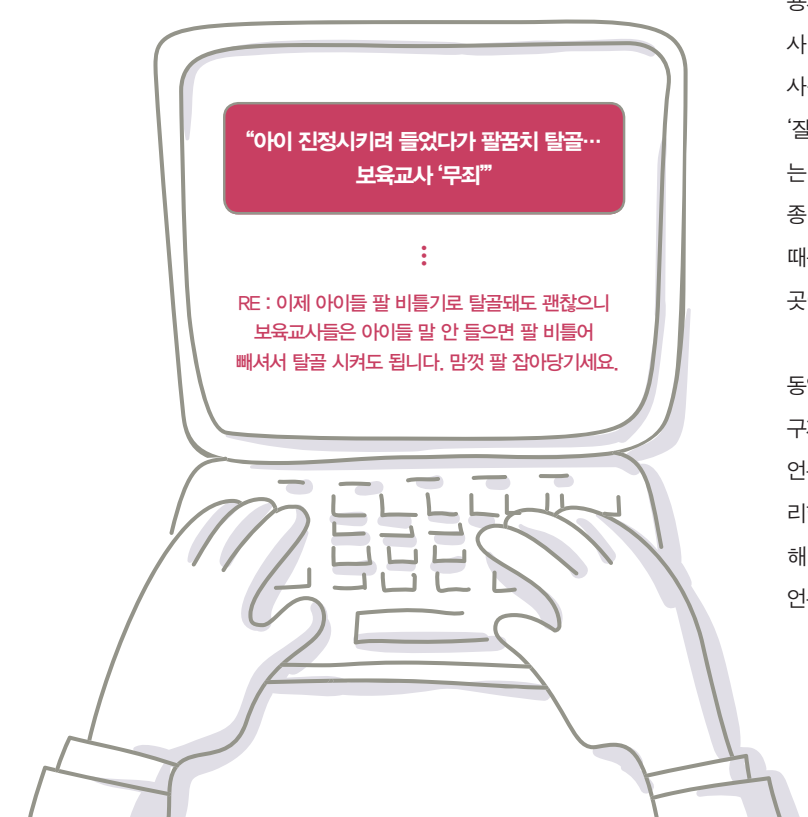

보육교사인 A 씨는 3년 동안 법정다툼을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대법원에서 아동의 팔꿈치를 탈골 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로 인해 '아동 팔꿈치를 탈골 시킨 교사'로 비난을 받고 있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몇 해 전 A 씨는 과잉행동을 하는 아동을 진정시키려 아동의 양팔을 잡아 2~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팔꿈치를 탈골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3년 가까이 걸려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보육교사로서 통상 취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자에 앉힌 행동으로 아동의 팔꿈치 탈골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A 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론사 기사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은 판결 결과를 '아이를 탈골 시키고도 교사가 무죄'라고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악성 댓글로 보육교사와 법원을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A 씨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A 씨는 정작 법원에서 '무죄'를 받고도 오히려 '아동 팔꿈치를 탈골시킨 교사'로 낙인찍히게 되었으며 이는 A 씨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제목과 내용을 바로잡아달라며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기사 제목을 변경하고, 법원의 판결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기사를 수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현행 '언론중재법'상 명시된 피해구제방법은 없어,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는 A 씨가 별도로 피해구제를 강구해야 하지만) 조정심리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기사댓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댓글을 삭제하는 선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전통미디어'라고 하는 신문, 방송 등과 달리 '인터넷'은 그 어느 미디어보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미디어로서, 위 사례와 같이 '인터넷 뉴스콘텐츠'의 일부가 된 기사 댓글은 기사와 함께 상호작용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부정확한' 기사는 '잘못된', '부정확한' 댓글로 이어지게 마련이며, 이러한 기사와 댓글로 이루어진 '잘못된', '부정확한' 인터넷 뉴스콘텐츠는 당사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언론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거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기사의 파급력에 더해 댓글이 피해를 증폭시키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콘텐츠(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동시에,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그 기사의 '댓글' 또는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되는 이른바 '펌글'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언론보도와 관련된 댓글 또는 펌글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보도에 준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향후 언론중재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피해에 대해 구제 기관 및 구제 청구 절차를 달리할 필요 없이, 언론분쟁을 일회적,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